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24.8.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에 전문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도록 하고 영문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인의 경력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관련 학과 인정방법 추가, 제출서류 간소화, 경력증명서 부분발급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분야별 등급 산정(안 별표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별 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3 비교에서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제외 규정을 삭제

나.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마련(안 제16조제6항, 제17조제1항제3호,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술인 해외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처리기간, 구비서류) 마련, 신청서식 수정

다.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인정방법 추가(안 별표2)

기술인의 경력신고 편의 제고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교육부 표준 분류체계를 활용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 방법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서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것에**”를 “**것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을 “**사본(상주한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것에**”를 “**것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로 한다.

2. 계약서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영문으로 번역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번역확인증명서

제1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영문) : 3일 이내

제46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기계 직무분야란 및 전기·전자 직무분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및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배관		배관	배관
				*지게차	지게차운전
				*굴삭기	굴삭기운전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더	로더운전
				*롤러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	*쇄석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기계가공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연삭
			일반기계		
			<삭제>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기계분야)	*정밀측정(기계분야)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급형				급형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자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기응용				

별표 2의 비고 제1호 중 “표의”를 “표 이외의”로 하고,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별표 3의 제2호 다목 비고 3)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

사, 설계, 관리감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3	1.04 (1.3×0.8)	1.04 (1.3×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	0.88 (1.1×0.8)	0.88 (1.1×0.8)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0.8)	1.1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0.8)	1.0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3×0.8)	1.04 (1.3×0.8)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1	0.88 (1.1×0.8)	0.88 (1.1×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u>실무기술인</u>	1.0	0.8 (1.0×0.8)	0.8 (1.0×0.8)

별표 3의 제3호 가목 비고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계획 및 조사, 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관련 업무	책임정도	정 의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인
	<u>실무기술인</u>	<u>해당 사업의 실무기술인</u>

별표 4의 기계 직무분야 건설기계 및 일반기계 전문분야란과 전기·전자 직무분야 산업계측제어 전문분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삭제>		설비보전		설비보전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굴삭기	굴착기운전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더	로더운전
					롤러	롤러운전
					모터그레이	모터그레이더운전
					블도저	블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	쇄석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천공기운전
	일반기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산업기계설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응용밀링
				일반기계		
				<삭제>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연삭
		금형	금형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기계분야)	정밀측정(기계분야)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전기 · 전자	산업계측 제어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	전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여 사업	사업명		
	발주청	사업기간	
	공사종류	적용공법	
	적용 융·복합건설기술	적용 신기술 등	시설물 종류
	공사(용역)개요 (150자 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 (단위 : 백만원)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급	경력증명서 [] 일반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분발급 및 영문 [] 부분발급 [] 영문	부수
	보유증명서 [] 일반 [] 시설공사적격심사 []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수
	제출처		

별지 제5호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분발급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시점 기준 최근 10년간 경력사항만 발급됩니다.
11.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제16조제6항에 따라 영문으로 번역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①	제6조(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			
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	-----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	-----			
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	-----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			
공증된 <u>것에</u> 한한다)	----- <u>것 또는 외국어번역행정</u>			
	<u>사의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u>			
	<u>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u> -----			

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u>사본</u>	1. ----- <u>사본</u>			
<u>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u>	<u>(상주한 경우에 한함)</u>			
<u>명자료 사본</u>				
2. <u>계약서 사본</u>	2. <u>계약서 또는 해외건설협회의</u>			
	<u>실적증명자료 사본</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건설기술인이 국외경력을 제	⑪ -----			
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			
국외사업 발주자 및 사용자(대	-----			
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	-----			
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	-----			

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
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 ⑤
(생략)
<신설>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수탁
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
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 것 또는 외국
어번역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에 -----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영
문으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건
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영문으로
번역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
서 및 번역확인증명서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영
문) : 3일 이내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재검토기한) -----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5년 1월 1일 -----

 -----.